

유럽지역 고등교육에 관한 자격 인정 협약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concerning Higher Education in
the European Region (jointly with the Council of Europe))

1997년 4월 11일 리스본에서 채택

유럽지역 고등교육에 관한 자격 인정 협약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concerning Higher Education in the European Region (jointly with the Council of Europe))

체약국들은,

교육받을 권리는 인권에 해당하며, 지식의 추구와 진보의 수단인 고등교육이, 개인과 사회 모두를 위해 예외적으로 풍요로운 문화적, 과학적 자산을 이룬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고등교육을 통해 평화, 상호 이해, 관용을 증진하고, 국민들과 국가들간의 상호 신뢰를 키우는 데 있어 필수적 역할을 맡아야 함을 *인식하며*,

유럽의 다양한 교육 체제는 전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예외적 자산인 유럽내의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철학적, 종교적, 경제적 다원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고려하면서*,

이 지역 내 모든 사람들이, 각 국가 주민들과 각 당사국 교육기관들에 속한 학생들이 다른 당사국의 교육자원에 대한 이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구체적으로는, 이들 다른 당사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계속 받거나 일정기간 수학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이 풍요로운 다원성의 자산으로부터 충분히 혜택받게 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유럽 내 다른 국가에서 취득한 수학증서, 졸업증서, 학위의 인정이 당사국간의 학문이동 증진의 중요한 척도가 됨을 *고려하고*,

기관의 자주성의 원칙을 중요히 여기고, 이 원칙을 확고히 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를 *자각하면서*,

공정한 자격 인정이 교육의 권리와 사회적 책임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확신하고*, 유럽에서 학문적 인정을 다루는 다음과 같은 유럽의회와 유네스코협약에 *관련하여*, 대학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졸업증서의 동등성에 관한 유럽협약 (1953, ETS No.15)과 그 의정서(1964, ETS No.49);

대학 수학 연한의 동등성에 관한 유럽협약 (1956, ETS No.21);

대학 자격에 관한 학문적 인정에 관한 유럽협약 (1959, ETS No.32);

유럽지역국가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 및 학위 인정에 관한 협약 (1979);

대학 수학연한의 일반적 동등성에 관한 유럽협약 (1990, ETS No.138),

유네스코 틀 안에서 채택되고 부분적으로 유럽 내 학문인정을 다루는, 지중해와 국경을 접하는 아랍 및 유럽 국가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 및 학위 인정과 관련된 국제협약(1976) 과 *관련하여*,

본 협약은 유네스코 협약들 및 다른 지역들을 포괄하는 국제권고의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과, 지역간 정보공유 개선에 대한 필요에 *유념하며*,

이 협약들이 체결된 이래 유럽 내 고등교육 분야에서 일어난 광범위한 변화와 그로 인한 국가 고등교육체제내 및 체제간의 다원화의 증대를 *자각하면서*,

유럽지역에서의 실제적 인정문제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를 *자각하고*, 현재 이루어지는 인정 관행을 개선하고, 이 관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럽 내 고등교육의 현실에 더욱 부합하게 할 필요를 *자각하며*,

유럽지역에서 인정 관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하는, 유네스코와 유럽의회의 주관아래 입안되어 채택된, 협약의 긍정적 의의를 *확신하고*,

현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실행하기 위한 영구적인 이행체제 제공의 중요성을
자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동의했다:

1. 정의

제 1조

본 협약의 목적상 다음의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고등교육예의) 접근

자격을 갖춘 후보라면 고등교육에 지원하고 입학에 대해 고려될 수 있는 권리

(고등교육기관과 프로그램에) 입학

자격 있는 지원자가 어떤 기관이나 프로그램에서 수학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한 체제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평가

고등교육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교육 수준을 세우는 과정

(개인이 가진 자격증의) 평가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개인이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들에 대한 서면 평가

권한있는 인정기관

외국 자격증의 인정에 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공식적으로 담당하는 기구

고등교육

어느 한 당사국의 자격 있는 관련 기관이 그 국가의 고등교육 체제에 속한다고 인정하는 중등 이후 수준의 모든 형태의 수학과정 또는 일단의 수학과정

고등교육 기관

고등교육을 제공하면서 당사국의 자격 있는 기관이 고등교육 체제에 속한다고 인정하는 기관

고등교육 프로그램

당사국의 자격 있는 기관이 그 나라의 고등교육 체제에 속한다고 인정한 수학과정과, 학생에게 고등교육 자격을 부여하는 그 과정의 수료

수학기간

평가되고 문서화되었으며, 그 자체로는 완전한 학업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상당한 지식 혹은 기술의 습득을 나타내는 모든 고등교육 프로그램 요소

자격

가. 고등교육 자격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료했음을 입증하는, 자격있는 기관이 발급 한 학위, 졸업증서, 또는 기타 수료증서

나. 고등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자격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료했음을 입증하고 그 자격의 소지자에게 고등 교육 입학(접근의 정의)을 위해 고려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자격있는 기관이 발급한 졸업증서나 기타 수료증서

인정

교육 혹은 취업 활동 기회를 주기 위해 자격있는 기관이 외국의 교육관련 자격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

요건

가. 일반적 요건

고등교육 또는 그것의 일정수준에 접근하기 위해, 혹은 일정 수준의 고등교육 자격의 수여를 위해 어떤 경우에라도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

나. 구체적 요건

일반적 요건에 덧붙여, 특정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하기 위해, 혹은 어떤 특별한 학업분야의 고등교육자격의 수여를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

II. 당국의 권한

제 II.1조

1. 당사국의 중앙 당국들이 인정 사례들에 있어서의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 그 당사국은 즉각적으로 본 협약 규정들에 구속되며 그 영토상에서 동 규정들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인정 문제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그 당사국의 구성체들에 있는 경우, 동 당사국은 기탁소들 가운데 한 곳에, 협약의 서명시 또는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서의 기탁시, 혹은 그 이후 어느 때라도 그 당시의 헌법적 상황이나 구조에 대한 간단한 진술서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당사국들의 구성체들의 지정된 자격있는 기관들은 그들의 영토상에서 본 협약 규정들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2. 인정 문제들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개별 고등교육 기관들이나 다른 조직체들에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그 헌법적 상황이나 조직에 따라 본 협약의 원본을 이들 기관들이나 조직체들에 송부하고 동 규정들에 대한 우호적 고려와 적용을 장려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제 II.2조

협약의 서명시 또는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서의 기탁시, 혹은 그 이후 어느 때라도, 각 회원국, 교황청, 또는 유럽공동체는 현 협약의 기탁소 또는 인정 사례들에 있어 다른 범주의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기관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 II.3조

본 협약의 당사국이 이미 당사국이거나 당사국이 될 수도 있는, 기존의 혹은 향후에 마련될 조약에 포함되어 있거나 유래하는, 당사국들 가운데 어느 한 국가에서 발급된 자격의 인정에 관한 더욱 호의적인 규정들은, 본 협약의 그 어떤 부분에 의해서도 손상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III. 자격평가와 관계되는 기본 원칙들

제 III.1조

1. 당사국들 가운데 어느 한 국가에서 발급된 자격 소지자는 적합한 기관에 청구하여 자격들을 적절히 평가받을 수 있다.

2. 이 점에 있어서 지원자의 성별, 인종, 피부색, 장애여부,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다른 견해, 민족적, 인종적 혹은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과의 관련여부, 재산, 출생상의 혹은 기타 지위 등을 이유로, 혹은 인정 대상인 자격의 진가에 관계되지 않는 그 밖의 상황을 이유로, 차별은 있을 수 없다. 이 권리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각 당사국은 오로지 성취된 지식과 기술을 근거로 하여 자격들의 인정을 위한 지원서의 평가를 하도록 적절한 약정을 마련할 의무를 진다.

제 III.2조

각 당사국은 자격들의 평가와 인정에 사용되는 절차와 평가 기준이 투명하고, 일관되며, 신뢰성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III.3조

1. 인정에 관한 결정은 인정의 대상인 자격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첫째로 충분한 정보 제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며, 동 지원자는 그러한 정보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
3. 지원자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격을 발급한 기관들은 지원자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자격의 소지자, 관련 기관, 혹은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4. 당사국들은 그들의 교육체제에 속하는 모든 교육 기관들이 동 기관들에서 취득된 자격들의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한 정보 요구에 응하도록 적절히 지시하거나 장려해야 한다.
5. 지원서가 관련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책임은 평가 수행 기관에게 있다.

제 III.4조

각 당사국은 자격의 인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국의 교육제도에 관한 충분하고 명료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III.5조

인정에 관한 결정은 권한있는 인정기관이 미리 밝히고 이 경우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제공되기까지 걸린 시간으로부터 계산한 온당한 시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인정이 보류되면, 인정의 부여를 거절하는 이유를 명시해야 하고, 지원자가 나중에 인정을 획득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인정이 보류되거나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지원자는 적당한 시한 내에 항소할 수 있다.

IV.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기회를 주는 자격인정

제 IV.1조

각 당사국은 자격을 취득한 당사국과 동 자격에 대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사국간에 고등교육을 받기 위한 일반적 요건들간의 상당한 차이가 제시되지 않는 한 이들 당사국의 고등교육 체제에 속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당사국들에서 고등교육을 받기 위한 일반적 요건을 갖춘 다른 당사국에서 발급한 자격들을 인정해야 한다.

제 IV.2조

대안으로는 어느 한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들 가운데 한 곳에서 발급된 자격의 소지자가 동 소지자의 요청에 따라 그 자격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며, 그러한 경우에 제 IV.1조의 규정들을 준용한다.

제 IV.3조

어떤 자격이 그 자격을 취득한 당사국의 특정한 형태의 고등교육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접근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한 당사국과 동 자격에 대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사국간에 고등교육을 받기 위한 요건들간의 상당한 차이가 제시되지 않는 한, 모든 다른 당사국은 그러한 자격들을 소지한 이들에게 그 나라의 고등교육 체제에 속하는 기관들에서의 유사한 특정 프로그램들에 대한 접근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 IV.4조

특정한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입학이 일반적 요건에 더하여 구체적 요건의 달성 여부에 달린 경우, 관련 당사국의 권한있는 기관들은 다른 당사국들에서

취득한 자격의 소지자들에게 추가 요건을 동등하게 부여하거나 다른 당사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가진 지원자들이 동등한 요건을 갖추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제 IV.5조

학교를 마치는 수료증서를 취득한 당사국에서 그 증서들이 전제조건으로서 추가의 자격시험과 연계하여서만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다른 당사국들은 이 요건들을 조건부로 하여 접근기회를 제공하거나 그들 고유의 교육제도 내에서 그러한 추가적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대안을 제안할 수 있다. 어느 회원국, 교황청 또는 유럽공동체는, 협약의 서명시 또는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서의 기탁시, 혹은 그 이후 어느 때라도, 본 조 규정들을 이용하는 기탁소들 가운데 한 곳에 본 조를 적용하고자 하는 당사국들을 명시하면서 이를 알려야 한다.

제 IV.6조

제 IV.1, IV.2, IV.3, IV.4, IV.5조의 규정들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느 한 고등교육 기관이나 그러한 기관내의 어떤 프로그램으로의 입학은 제한되거나 선택적일 수 있다. 고등교육 기관 혹은 프로그램으로의 입학이 선택적인 경우, 입학절차는 외국 자격의 평가가 제 III 에 기술된 공정성과 무차별성의 원칙에 따라 수행되는 것을 보장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제 IV.7조

제 IV.1, IV.2, IV.3, IV.4, IV.5조의 규정들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느 한 고등교육 기관으로의 입학은 지원자가 해당 기관의 강의 언어 또는 언어들이나 다른 지정 언어들에 대한 충분한 언어능력의 제시를 조건부로 하여 결정될 수 있다.

제 IV.8조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기회가 비전통적인 자격들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당사국들에서는, 다른 당사국들에서 취득한 비슷한 자격들을 그 자격들에 대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사국에서 취득되는 비전통적 자격들과 비슷한 방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제 IV.9조

고등교육 프로그램으로의 입학허가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그 영토안에서 운영되는 외국 교육기관들이 발급한 자격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그러한 교육기관들의 소속 당사국과 체결된 특정 협정이나 국내 법령의 구체적 요건을 갖출 때 가능하다.

V. 수학 기간의 인정

제 V.1조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마친 수학 기간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인정은, 다른 당사국에서 수료한 수학 기간들과 인정을 신청한 당사국에서 이 수학기간이 대체할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부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제시되지 않을 때, 인정을 신청한 당사국의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학 기간들로 이루어진다.

제 V.2조

대안으로는, 어느 한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서의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수학 기간을 마친 사람이 해당 개인의 요청에 따라 그 수학 기간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그러한 경우에 제 V.1조의 규정들을 준용한다.

제 V.3조

특히,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수학 기간의 인정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가. 한편으로는 해당 수학기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고등교육기관이나 권한있는 기관과, 다른 한편으로는 신청된 인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고등교육기관이나 권한있는 인정기관 사이에 사전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나. 수학기간을 수료한 고등교육기관이 그 학생이 상술한 수학기간동안 규정된 요건을 성공적으로 달성했음을 입증하는 수료증서나 성적표를 발급한 경우.

VI. 고등교육 자격 인정

제 VI.1조

인정에 관한 결정이 고등교육 자격으로 증명된 지식과 기술을 근거로 하는 정도까지, 각 당사국은, 인정을 신청한 대상 자격과 인정을 신청한 당사국의 상응하는 자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제시되지 않는 한, 다른 당사국에서 수여된 고등교육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

제 VI.2조

다른 방식으로는, 어느 한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들에서 발급된 고등교육 자격의 소지자가 그 소지자의 요청에 따라 그 자격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그러한 경우에 제 VI.1조의 규정들을 준용한다.

제 VI.3조

다른 당사국에서 발급한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은 다음과 같은 결과 가운데 하나 또는 모두의 결과를 갖는다:

(가) 인정을 신청한 당사국의 자격 소지자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조건아래, 관련 시험을 비롯하여 더 높은 단계의 고등교육 학업 및/또는 박사과정 준비단계에 대한 접근 기회;

(나) 인정을 신청한 당사국이나 그 당사국의 사법권이 적용되는 지역의 법규에 좌우되는 학문적 타이틀의 사용.

덧붙여, 인정은 인정을 신청한 당사국이나 그 당사국의 사법권이 적용되는 지역의 법규에 좌우되는 노동시장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제 VI.4조

어느 한 당사국에서 다른 당사국에서 발급된 고등교육 자격을 평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가) 일반적 취업 목적을 위한 자문;

(나) 어느 교육 기관의 프로그램으로의 입학 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자문;

(다) 다른 권한있는 인정 기관에 대한 자문.

제 VI.5조

각 당사국은 그 기관들의 소속 당사국과 체결된 특정 협정이나 국내 법령이 요구하는 구체적 요건들에 따라 그 영토 내에서 운영되는 외국 교육기관들이 발급한 고등교육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VII. 난민·유민·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소지한 자격의 인정

제 VII조

각 당사국은, 난민, 유민,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다른 당사국의 자격을 문서상의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없는 경우라도, 고등교육, 더 높은 단계의 고등교육 프로그램이나 취업활동에 대한 접근기회를 갖기 위한 관련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공정하고 신속히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하기 위해 그 국가의

교육체제의 틀 안에서 그리고 헌법, 법률, 규칙상의 규정들에 따라 모든 가능하고 타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VIII. 고등교육 기관과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정보

제 VIII.1조

각 당사국은, 국내 고등교육체제에 속하는 모든 기관이나, 이 기관들이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것은 다른 당사국의 관할 당국이 이 기관들이 발급한 자격들의 질이 인정을 신청한 당사국에서의 인정에 합당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한다:

- (가) 고등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체제를 수립한 당사국들의 경우: 고등교육 자격을 수여하는 모든 형태의 고등교육기관과 고등교육 자격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들에 구체적인 질의 수준과 평가의 방법 및 결과에 대한 정보;
- (나) 고등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체제를 수립하지 않은 당사국들의 경우: 국내 고등교육 체제에 속하는 모든 고등교육기관이나 고등교육 프로그램 내에서 취득한 다양한 자격의 인정에 대한 정보.

제 VIII.2 조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의 개발, 유지, 제공을 위해 적절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 (가) 국내 고등교육 체제에 속하는, 각 기관의 전형적인 특성을 지닌, 서로 다른 형태의 고등교육기관들에 대한 개관;
- (나) 국내 고등교육 체제에 속하는 (공·사립) 인정기관 명단과, 다른 형태의 자격을 수여할 권한 및 각 형태의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기회를 얻기 위한 요건의 제시;
- (다) 고등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한 기술;
- (라) 동 당사국이 자국의 교육체제에 속한다고 간주하는 영토 밖에 소재한 교육기관 명단

IX. 자격인정문제에 관한 정보

제 IX.1조

고등교육에 관한 자격의 인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당사국들은 취득 자격의 완전한 기술을 위한 투명한 제도를 수립할 의무를 진다.

제 IX.2조

1. 적절하고, 명확하고, 최신의 정보에 대한 요구를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국가 정보센터를 세우고 기탁소 가운데 한 곳에 이의 설립이나 설립에 영향을 주는 변화에 대해 알려야 한다.
2. 각 당사국에서 정보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가) 고등교육 체제와 정보센터가 소재한 국가에 관한 권위있고 정확한 정보의 이용을 용이하게 한다;
 - (나) 다른 당사국들의 고등교육 자격에 관한 정보의 이용을 용이하게 한다;
 - (다) 국내 법규에 따라 교육제도와 인정자격들에 대한 자문이나 정보를 제공한다.
3. 모든 국가 정보센터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 IX.3조

당사국들은 국가 정보센터를 통해 또는 다른 방법으로 유네스코/유럽의회 졸업증서 보완서 혹은 당사국들의 고등교육기관들이 발급하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문서들의

이용을 증진해야 한다.

X. 이행 구조

제 X.1조

다음 기구들이 본 협약의 이행을 감독하고, 증진하며 용이하게 한다:

(가) 유럽지역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협약 위원회;

(나) 1994년 6월 9일에 개최된 유럽의회장관위원회와 1994년 6월 18일에 개최된 유네스코유럽지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립된, 학문 이동과 인정에 관한 유럽국가정보센터 네트워크 (ENIC 네트워크).

제 X.2조

1. 유럽지역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협약 위원회 (이하 '위원회' 로 표기)가 이에 따라 설립된다. 이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대표자 1명으로 구성된다.
2. 제 X.2조의 목적상 '당사국'이라는 용어는 유럽공동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본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면, 제 XI.1조 1항에 언급된 국가들과 교황청, 유럽공동체와 ENIC 네트워크의 의장은 동 위원회의 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 인정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지역내 정부 및 비정부기구들의 대표자들도 위원회 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4. 유럽지역 회원국들에서 고등교육 수학, 졸업증서, 학위 인정 협약의 적용을 위한 유네스코 지역위원회 의장도 역시 동 위원회 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5. 동 위원회는 본 협약의 적용을 증진하고 그 이행을 감독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본 협약의 이행과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을 위한 적용을 고려함에 있어 당사국들의 관할당국을 지도하기 위한 권고, 선언, 의정서, 모범사례 등을 당사국들 다수결에 의해 채택할 수 있다. 당사국들은 이러한 문서들의 구속받지는 않지만, 당사국들은 이들을 적용하고, 관할 당국이 이 문서들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적용을 장려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동 위원회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 ENIC 네트워크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6. 위원회는 유럽의회와 유네스코의 관련 기구들에 보고해야 한다.
7. 위원회는 유네스코의 주관아래 채택된 고등교육 수학, 졸업증서, 학위 인정에 관한 협약 적용을 위한 유네스코 지역위원회들과 연계를 유지해야 한다.
8. 당사국들의 다수결로 의사정족수를 구성한다.
9. 위원회는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위원회는 최소한 매 3년마다 일반 회기로 개최된다. 위원회는 본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지 1년 이내에 첫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10. 위원회 사무국은 유럽의회 사무총장과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공동으로 위임된다.

제 X.3조

1. 각 당사국은 학문 이동과 인정에 관한 유럽국가정보센터 네트워크(ENIC)의 회원으로 제9-2조에 의해 설립되거나 유지되는 국가 정보센터를 임명해야 한다. 제9-2조에 따라 어느 한 당사국에 한 개 이상의 국가 정보센터가 설립되거나 유지되는 경우, 모든 센터가 네트워크 회원이 되나 해당 국가정보센터들은 한 표만을 행사할 수 있다.
2. 구성상 본 협약 당사국들의 국가정보센터로 한정되어 있는 ENIC 네트워크는, 관할 국가기관들에 의한 본 협약의 실제적 이행을 uphold하고 지원해야 한다. 네트워크는 최소한 일년에 한 번 전체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네트워크는

위탁사항에 따라 의장과 집행국을 선출한다.

3. ENIC 네트워크 사무국은 유럽의회 사무총장과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공동으로 위임된다.

4. 당사국들은, ENIC 네트워크를 통해, 특히 국가정보센터들이 학문 인정과 이동과 관련한 활동에 있어 국가정보센터에 유익한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당사국들의 국가정보센터와 협력하여야 한다.

XI. 최종 조항

제 XI.1조

1. 본 협약은 다음 국가들의 서명을 위해 공개된다:

(가) 유럽의회 회원국;

(나) 유네스코 유럽지역 회원국;

(다) 유럽의회의 유럽문화협약 및/또는 유럽지역 국가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 및 학위 인정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의 다른 서명국, 체약국 혹은 당사국, 또한 이들은 본 협약 채택을 위한 외교상 회의에 초청된다.

2. 이 국가들과 교황청은 다음 사항들에 구속받기로 동의함을 표명할 수 있다:

(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에 관해 유보없는 서명; 혹은

(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이 따르는, 비준, 수락 또는 승인에 좌우되는 서명; 혹은

(다) 가입.

3. 서명은 기탁소 가운데 한 곳과 이루어져야 한다.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서는 기탁소 가운데 한 곳에 기탁되어야 한다.

제 XI.2조

본 협약은 최소한 유럽의회 및/또는 유네스코 유럽지역 3개 회원국을 포함하여 5개국이 본 협약의 구속력을 받아들인다는 동의를 표명한 뒤 한 달의 기간이 지난 다음 달의 첫 번째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다른 국가의 경우, 본 협약의 구속력을 받아들인다는 동의를 표명한 뒤 한 달의 기간이 지난 다음 달의 첫 번째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XI.3조

1. 본 협약의 효력 발생 후, 제 XI.1조에 따라 등재된 범주에 속하지 않는 국가는 본 협약에 대한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의 요구는 기탁소들 가운데 한 곳에 전달되어야 하고, 기탁소들은 이를 유럽지역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협약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기 최소한 3개월 전에 당사국들에게 송부해야 한다. 동 기탁소는 유럽의회 장관위원회와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2. 가입 요청을 한 국가를 본 협약에 가입하도록 초청하는 결정은 당사국들 2/3 다수결로 정한다.

3. 본 협약의 효력 발생 후 유럽공동체는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라 협약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기탁소들 가운데 한 곳에 전달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XI.3조 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4. 가입국가나 유럽공동체와 관련하여, 본 협약은 기탁소 가운데 한 곳에 가입서를 기탁한 뒤 한 달이라는 기간이 지난 다음 달의 첫 번째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XI.4조

1. 본 협약의 당사국들이자 동시에 다음 협약들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협약들의 당사국들은 아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대학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졸업증서의 동등성에 관한 유럽협약 (1953, ETS No.

15)과 그 의정서 (1064, ETS No.49);

대학 수학 연한의 동등성에 관한 유럽협약 (1956, ETS No.21,

대학 자격에 관한 학문적 인정에 관한 유럽협약 (1959, ETS No.32),

지중해와 국경을 접하는 아랍 및 유럽 국가 고등교육 수학, 졸업증서 및 학위 인정과 관련된 국제협약 (1976)

유럽지역 국가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 및 학위 인정에 관한 협약 (1979)

대학 수학연한의 일반적 동등성에 관한 유럽협약 (1990, ETS No.138),

(가) 상호 관계에 있어 본 협약의 규정들을 적용한다;

(나) 그들이 당사국인 위에 언급한 협약들을, 이 협약들의 당사국이나 본 협약의 당사국인 아닌 국가들과의 관계에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2. 본 협약의 당사국들은, 지중해와 국경을 접하는 아랍 및 유럽 국가들에서의 고등교육 수학, 졸업증서, 학위 인정과 관련된 국제협약을 예외로 하고, 제1항에 언급된 협약들 가운데 어느 한 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것을 삼가야 할 의무가 있다.

제 XI.5조

1. 모든 국가는, 서명시 혹은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서의 기탁시, 본 협약이 적용될 영토나 영들을 명시해야 한다.

2. 모든 국가는 나중 어느 때라도 기탁소 가운데 한 곳에 전달한 선언을 통해 본 협약의 적용을 동 선언에 명시된 다른 영토로 확대할 수 있다. 그러한 영토의 경우, 협약은 기탁소가 그러한 선언을 수령한 날로부터 한 달의 기간이 지난 다음 달의 첫 번째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3. 앞의 두 항에 따라 만들어진 선언은 그 선언에 명시된 모든 영토와 관련하여 기탁소 가운데 한 곳에 전달된 통보를 통해 철회될 수 있다.

제 XI.6조

1. 당사국은 어느 때라도 기탁소 가운데 한 곳에 전달된 통보를 통해 본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그러한 폐기는 기탁소가 그 통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12개월의 기간이 지난 다음 달의 첫 번째 날에 유효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폐기는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이미 취해진 인정관련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3. 어느 한 당사국이 본 협약의 목표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규정을 위반한 결과로서 본 협약 이행의 중지 또는 유보는 국제법에 따라 다루어져야 한다.

제 XI.7조

1. 모든 국가나 교황청 또는 유럽 공동체는 서명 시 혹은 비준, 수락이나 승인 또는 가입서의 기탁 시, 본 협약의 다음 조항들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제 IV.8조

제 V.3조

제 VI.3조

제 VIII,조

제 IX.3조

이 밖의 다른 유보 조치는 취할 수 없다.

2. 전 항에 따라 유보조치를 위한 당사국은 기탁소 가운데 한 곳에 통보함으로써

이 유보조치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철회는 기탁소가 그러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협약의 규정에 대해 유보조치를 취한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해당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유보조치가 부분적이거나 조건부인 경우 당사국 자신이 수용하는 한 그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도 있다.

제 XI.8조

1. 유럽지역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협약 위원회는 당사국 2/3 다수결로 본 협약의 수정안을 채택할 수 있다. 이렇게 채택된 수정안은 본 협약의 의정서에 통합되어야 한다. 동 의정서는 어떤 경우라도 의정서에 구속받는 당사국들의 동의의 표명을 요구해야 하는 효력발생의 양식을 명시해야 한다.

2. 위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본 협약 제3절에 대해서는 어떤 수정안도 있을 수 없다.

3. 수정안에 대한 제안은 기탁소 가운데 한 곳에 전해져야 하고, 기탁소는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기 최소한 3개월 전에 당사국들에게 이를 송부해야 한다. 기탁소는 또한 유럽의회 장관위원회와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제 XI.9조

1. 유럽의회 사무총장과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본 협약의 기탁소가 된다.

2. 어떤 행위, 통보, 의사전달이 기탁된 기탁소는 유럽의회 및/또는 유네스코 유럽지역의 다른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본 협약 당사국들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가) 서명;

(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서의 기탁;

(다) 제 XI.2조와 제 XI.3조 4항의 규정에 따른 본 협약의 효력 발생일;

(라) 제 XI.7조의 규정에 따른 유보와 제 XI.7조의 규정에 따른 유보조치의 철회;

(마) 제 XI.6조에 따른 본 협약의 폐기;

(바) 제 II.1조 또는 제 II.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선언;

(사) 제 IV.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선언;

(아) 제 XI.3조의 규정에 따른 가입요청;

(자) 제 XI.8조의 규정에 따른 제안;

(차) 본 협약과 관련된 그 밖의 다른 행위, 통보 또는 의사전달.

3. 본 협약의 규정들에 따라 의사전달을 받거나 통보를 하는 기탁소는 즉시 다른 기탁소에 이에 관해 알려야 한다.

이상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에 서명한 대표자들은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약에 서명했다.

1997년 4월 리스본에서 영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작성된 4개의 동등한 정본은, 2 부로 그 중 한 부는 유럽의회의 문서기록소에 다른 한 부는 유네스코 문서기록소에 기탁한다. 인증본은 제 XI.1조에 언급된 국가들, 교황청 및 유럽공동체, 그리고 유엔사무처에 송부된다.